

미국법률협회( The American Law Institute)와  
국제도산협회(The 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의  
공동 프로젝트

## 국제적 사건에 있어서 법원간의 의견교환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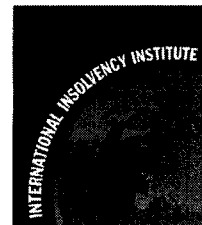
“ 국제도산: 북미자유무역협정 가입국 간의 협력” 책자에 수록되어  
2000년 5월 미국법률협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공포됨

그리고

2001년 6월 국제도산협회에 의하여 승인됨



The American Law Institute  
4025 Chestnut Street  
Philadelphia, Pennsylvania 19104-3099  
Telephone: (215) 243-1600  
Telecopier: (215) 243-1636  
E-mail: [ali@ali.org](mailto:ali@ali.org)  
Website: <http://www.ali.org>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  
Scotia Plaza, Suite 2100  
40 King Street West  
Toronto, Ontario M5H 3C2  
Telephone: (416) 869-5757  
Telecopier: (416) 360-8877  
Email: [info@iiglobal.org](mailto:info@iiglobal.org)  
Website: <http://www.iiglobal.org>

미국법률협회( The American Law Institute)와  
국제도산협회(The 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의  
공동 프로젝트

## 국제적 사건에 있어서 법원간의 의견교환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

*“ 국제도산: 북미자유무역협정 가입국 간의 협력” 책자에 수록되어  
2000년 5월 미국법률협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공포됨*

*그리고*

*2001년 6월 국제도산협회에 의하여 승인됨*

저작권자 © 2003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

“ 국제적 사건에 있어서 법원간의 의견교환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 은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에 의하여, 국제도산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서 개발되었다. 미국법률협회는 국제적 사건에 대하여 위 지침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며 권장하는 바이다.

이 번역문은 미국법률협회에서 번역, 출판, 배포하는 것이다. 미국법률협회와 국제도산협회(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에서는 위 지침을 한글로 번역하여 준 대한민국의 김형두 판사(서울고등법원)에게 감사를 표한다.

“ 국제적 사건에 있어서 법원간의 의견교환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 은 그 전문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로 번역되어 있다.

위 번역문들은 국제도산협회(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의 웹 사이트인 <http://www.iiiglobal.org/international/guidelines.html>에 게시되어 있다.

The American Law Institute  
4025 Chestnut Street  
Philadelphia, Pennsylvania 19104-3099  
Telephone: (215) 243-1600  
Telecopier: (215) 243-1636  
E-mail: [ali@ali.org](mailto:ali@ali.org)  
Website: <http://www.ali.org>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  
Scotia Plaza, Suite 2100  
40 King Street West  
Toronto, Ontario M5H 3C2  
Telephone: (416) 869-5757  
Telecopier: (416) 360-8877  
E-mail: [info@iiiglobal.org](mailto:info@iiiglobal.org)  
Website: <http://www.iiiglobal.org>

## 머리말

2000년 5월, 미국법률협회(ALI: American Law Institute)는 그 협회의 국제도산프로젝트(Transnational Insolvency Project)의 결과물에 최종 승인을 하였다. 이는 새로 제정된 멕시코 도산법을 참조하기 위해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결국 “국제도산: 북미자유무역협정 가입국 간의 협력” (*Transnational Insolvency: Cooperation Among the NAFTA Countries*)이라는 제목하에 총 4권의 책으로 2003년에 출판되었다. 위 책들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프로젝트의 첫번째 단계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도산법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인 *NAFTA 가입국 간의 협력의 원칙*을 소개한 부분이다. 위 책들의 모든 내용은 NAFTA에 가입한 3개국 출신의 보고자와 고문으로 구성된 연구팀의 공동작업으로 작성되었으며, 철저히 국제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위 책들은 Juris Publishing, Inc.에서 출판하였는데, 미국법률협회의 웹사이트([www.ali.org](http://www.ali.org))에서 주문할 수 있다.

“국제적 사건에 있어서 법원간의 의견교환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은 원래 위 책들 중 *원칙*편의 부록B로 포함된 내용으로서, 미국법률협회는 2000년 위 책의 나머지 내용과 함께 승인을 하였다. 그런데 위 지침은 *원칙*들과는 별도로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위 지침은 각국에서 번역되어 확산되었으며 법원에서 인용되고 적용되었다. 또한 국제도산협회(III: 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와 캐나다 도산협회(IIC: Insolvency Institute of Canada)에 의해 독립적으로 승인받기도 하였다. 비록 초기에는 NAFTA 가입국의 도산법원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개발되었지만, 국제도산협회는 위 지침이 NAFTA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적절하게 응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제도산협회에는 40개 이상 국가의 도산법원의 판사와 변호사들이 가입해 있다. 도산사건의 재판에 위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 위 지침은 특히 중복하여 제기된 사건을 재판하는 경우에 법원간의 협력에 필요한 분별력 있고 일관성이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 예는,

미국법률협회 발간의 국제 관할권과 재판 프로젝트 중 제12(e)조(2003년 임시 초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국제도산협회가 위 지침을 출간하고 전 세계의 더 많은 판사와 변호사들에게 알려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 미국법률협회는 감사의 마음을 표시한다. 국제도산협회의 의장인 브루스 레너드(E. Bruce Leonard)는 국제도산프로젝트(Transnational Insolvency Project)의 캐나다측 공동 보고자였고, 위 지침의 영어판을 작성할 때 가장 주요한 기안자였으며, 각국의 언어로 위 지침을 번역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추진하여 왔다. 그에게 감사를 표한다. 위 지침이 더욱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 번역자들에게도 감사를 표시한다. 우리는 새롭게 출간된 영어판과 그 번역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한다. 그럼으로써 계속 국제화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법원과 법체계 사이의 의견교환 및 상호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4. 1. 30.

미국법률협회  
집행이사

랜스 리브만(LANCE LIEBMAN)

# 국제도산협회

## 머리말

일류의 도산 전문가, 판사, 학자, 입법자로 구성된 국제적 단체인 국제도산협회(III: 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는, 국제적이고 여러 국가에 걸친 도산사건에 대하여, 미국법률협회(ALI : American Law Institute)의 “*국제적 사건에 있어서 법원간의 의견교환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적용할 것을 기꺼이 추천한다. 위 지침은 국제도산협회의 한 위원회에서 검토, 연구되었으며, 2001년 6월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도산협회의 연례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국제도산협회에서 승인한 이후, 위 지침은 몇 개의 국제적 사건에 적용됨으로써 국제적 협력을 성공적으로 얻어 내어 모든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였다. 국제도산협회는 도산 전문가와 판사들에게 위 지침을 국제적 재판에 있어서 가능한 한 초기 단계부터 적용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추천한다. 위 지침은 법원들간의 상호 의견교환이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한 법원의 소송이 다른 법원에서의 소송의 쟁점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 지침은 비록 도산법의 맥락에서 발전되었지만, 소송 전문가와 판사들은 위 지침이 두 개 이상의 법원이 관련된 국제적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도 유용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위 지침은 복수의 국가에 제기된 국제적 소송에 여러 개의 법원이 관계하고 있는 경우에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위 지침이 모든 국내 실무관행과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위 지침은 재판당사자의 실제적 권리를 변경하거나 침해되면 안 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혜택을 줌으로써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국제도산협회는 위 지침을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웨덴어로 번역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한 스페인어로 번역해 준 미국법률협회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 국제도산협회는, 위 지침을 번역하여 세계 주요 국가에서 전파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 준 미국도산협회(ALI: American Law Institute), 미국도산대학(ACB: American College of Bankruptcy), 캐나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 상사위원회(OSJCLC: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 Commercial List Committee)에게 감사를 표시한다.

위 지침이 적용된 재판사례를 알게 된 독자들과서는 즉시 국제도산협회에 그 사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해주시면 감사하겠다(팩스: 416-360-8877, 이메일: info@iiiglobal.org). 그렇게 하면 위 지침의 승인 및 적용으로 얻은 경험 및 실증적인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 지침의 개정사항과 위 지침이 적용된 재판사례는 지속적으로 국제도산협회의 웹사이트(www.iiiglobal.org)에 게시될 것이다.

국제도산협회와 그 회원들은 위 지침의 개발과 성공에 일조를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법률협회가 위 지침을 발전시키고 전세계의 도산 전문가, 판사, 학자, 입법자들에게 이를 전파하려는 비전을 가진 것을 높은 평가한다. 위 지침을 국제적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국제도산 및 재건실무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가능하게 해준 미국법률협회측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국제도산협회  
의장

브루스 레너드(E. Bruce Leonard)

토론토, 온타리오  
2004년 3월

## 사법관계자 서문

우리는 한 국가의 국경을 넘어 벌어지는 청산 또는 재건절차 사건에 있어서 법원들 사이의 협력과 조정은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유익하다고 믿는다. 국제적 절차에서 법원들 사이의 의견교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 만들어서 1997년 UN총회에서 승인받은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을 통하여, UN에서 인정된 바 있다.

위와 같은 의견교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2002년부터 EU회원국 사이에 발효된 “국제적 도산절차에 관한 유럽연합규칙(EU Regulation on Insolvency Proceedings)”을 통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국제적 사건에 있어서 법원간의 의견교환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은 미국법률협회(ALI: American Law Institute)의 국제도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되었고, 멕시코, 미국, 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입국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위 지침은 미국법률협회와 전세계 40여 국에 회원을 두고 있는 국제도산협회(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의 승인을 받았다. 우리는 각국이 서로 다르면서도 독창적이며, 그 국가만의 자랑스러운 사법제도에 관한 고유한 전통과 개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위 지침은 어느 국가에 적용되는 국내법규나 소송절차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위 지침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실제법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위 지침은 국제적 사건에 관계하고 있는 각국 법원들의 절차에 적용되는 국내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면서, 국제적 협력을 권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위 지침은 관계된 국가의 절차법에 맞게 하기 위하여 또는 개별적 사건의 특별한 사정에 맞게 하기 위하여 변경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적 도산사건 또는 청산사건에 있어서 법원들 사이에 최고수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지침은 도산사건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위 지침은



국제간의 비도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 중의 몇 사람은 이미 국제적 도산사건에서 위 지침을 적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국제적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이나 변호사에게 위 지침을 적용하고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해보도록 권장하고 있다.

Mr. Justice David Baragwanath  
High Court of New Zealand  
Auckland, New Zealand

Hon. Sidney B. Brooks  
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District of Colorado  
Denver

Mr. Justice Miodrag Dordević  
Supreme Court of Slovenia  
Ljubljana

Hon. James L. Garrity, Jr.  
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Ret'd)  
Shearman & Sterling  
New York

Mr. Justice Paul R. Heath  
High Court of New Zealand  
Auckland, New Zealand

Chief Judge Burton R. Lifland  
United States Bankruptcy Appellate  
Panel for the Second Circuit  
New York

Hon. George Paine II  
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District of Tennessee  
Nashville

Mr. Justice Adolfo A.N. Rouillon  
Court of Appeal

Chief Justice Donald I. Brenner  
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Hon. Charles G. Case, II  
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District of Arizona  
Phoenix

Mr. Justice J.M. Farley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  
Toronto

Hon. Allan L. Gropper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New York

Hon. Hyungdu Kim  
Supreme Court of Korea  
Seoul

Mr. Justice Gavin Lightman  
Royal Courts of Justice  
London

Hon. Chiyong Rim  
District Court  
Western District of Seoul  
Seoul, Korea

Hon. Shinjiro Takagi  
Supreme Court of Japan (Ret'd)

Rosario, Argentina

Mr. Justice Wisit Wisitsora – At  
Business Reorganization Office  
Government of Thailand  
Bangkok

Industrial Revitalization Corporation of Japan  
Tokyo

Mr. Justice R.H. Zulman  
Supreme Court of Appeal of South Africa  
Parklands

## 번역자 서문

“ 국제적 사건에 있어서 법원간의 의견교환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은 미국법률협회(ALI: American Law Institute)의 국제도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되었고, 국제도산협회(III: 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의 승인을 받은 후 몇 개의 국제적 사건에 적용되었다. 위 지침은 법원들간의 국제적 협력을 성공적으로 얻어 내어 모든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인은, 나날이 국제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위 지침이 국제적 도산사건에 있어 대한민국 법원과 외국 법원 사이의 의견교환 및 상호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04. 3.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두

## 국제적 사건에 있어서 법원간의 의견교환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

### 서론 :

국제적 사건에 관한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사건에 관계된 국가들의 관리당국 사이의 의견교환이다. 법원은 파산절차와 재건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감독법원들이 도산기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서로 협력하여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 지침은 하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도산절차에 있어서 관련된 재판관할당국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협력과 조화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법관이 외국에 있는 법관이나 관재인과 직접적인 의견교환을 하는 것은 신뢰성과 적절한 절차 보장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만약 그 절차가 투명하고 명백하게 공정하지 않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소송당사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 사건에 있어서 법원간의 의견교환은 국내 사건의 경우보다 더 중요하고 더 민감하다. 이 지침은 위와 같은 의견교환을 권장하면서,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의견교환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 지침은 모든 관계당사자에게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면서, 도산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신속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 지침을 적용하려는 법원은 - 전부를 적용하든지 일부를 적용하든지, 또는 수정하여 적용하든지 그대로 적용하든지 - 적용하기 전에 정식으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사건에 관련된 다른 법원들이 지침을 승인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고, 다른 법원들이 지침을 승인할 때까지 임시로 승인할 수도 있다. 법관들, 대리인들,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행위기준에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승인법원은 다른 법원들이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형식으로 지침을 승인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침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를 승인준속의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지침의 승인은, 국내절차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절차적 결정을 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고지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다른 법원과의 의견교환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긴급 또는 비상상황하에서 이용되는 절차(고지요건을 포함한다)가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침을 더 고려한 다음에 최초의 효력발생기간을 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고지를 받을 권한이 있는 당사자들(예컨대, 모든 당사자들 또는 대표당사자들 또는 대표대리인)에 대한 의문사항과, 이의제기에 대한 법원 심사의 성질(예컨대, 신문을 거치는지, 거치지 아니하는지)은 각 재판관할당국의 절차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지침에서는 정하지 않는다.

이 지침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개별적 사건의 상황에 맞도록 변경되거나 수정되어질 수 있으며, 국제도산사회가 이 지침의 적용에 관한 경험을 축적함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오로지 국내절차 및 국내의 윤리적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적용된다. 이 지침은, 각 재판권지역의 법률과 관습에 의존하는 절차·고지에 대하여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지침은 국제적 도산에 관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고 적정하며 고도로 유용하게 보이는 접근방법을 대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상황하에서 위와 같은 수정을 거쳐 - 이 지침의 이용을 권장하는 바이다.

## 지침 제1조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원과의 의견교환에 앞서서, 법원은 그러한 의견교환이 그 국가의 모든 적용가능한 절차규정과 부합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 법원이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전부를 적용하든 일부를 적용하든, 또는 수정하여 적용하든 수정하지 않고 적용하든), 가능한 한 그 적용 이전에 이 지침을 정식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법원간의 지침의 조정은 바람직한 것이며, 두 법원의 공무원들은 지침의 적용과 이행에 관하여 지침 제8조 (d)항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 지침 제2조

법원은 그 법원에 계속된 절차와 다른 재판권지역에 계속된 절차를 조정 또는 조화시키기 위하여, 그 법원에 계속된 절차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다른 법원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 지침 제3조

법원은 그 법원에 계속된 절차와 다른 재판권지역에 계속된 절차를 조정 또는 조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재판권지역의 도산관재인 또는 법원의 권한 있는 대표자와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 지침 제4조

법원은 정당하게 임명된 도산관재인이, 외국법원의 승인하에, 그 외국법원과 직접적으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그 법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조건하에서, 그 도산관재인이 외국 재판권지역의 도산관재인을 통하거나, 당해 외국법원의 권한 있는 대표자를 통하여 외국법원과 의견교환을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지침 제5조

법원은 외국법원, 또는 외국법원의 권한 있는 대표자, 또는 외국의 도산관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외국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답변하여야 한다(이때 쌍방향 의견교환의 경우에는 지침 제7조에 따른다). 만약 법원이 외국의 도산관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일방적 의견교환에 관한 국내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그 법원의 권한 있는 대표자 또는 정당하게 임명된 도산관재인을 통하여 답변할 수 있다.

## 지침 제6조

어느 법원의 다른 법원에 대한 연락은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a) 정식의 명령, 판결, 의견, 결정이유, 배서한 중서, 절차의 녹취서, 기타 문서의 사본을 다른 법원에 직접 송부하거나 전달하는 방법. 이때 법원은 사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에게 고지한다.
- (b) 대리인, 또는 외국·국내의 도산관재인에게 당해 법원에 제출되거나 제출될 문서, 신청서와 답변서, 선서진술서, 날인증서, 개요서, 기타 문서의 사본을 다른 법원에 전달하거나 배달하도록 명하는 방법. 이때 법원은 사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에게 고지한다.
- (c) 전화, 또는 화상회의, 기타 다른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다른 법원과 쌍방향 의견교환에 참여하는 방법. 이때는 지침 7이 적용된다.

## 지침 제7조

지침 제2조와 제5조에 따라 전화, 화상회의,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법원간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두 법원 중 적어도 어느 한 법원으로부터 다른 지시가 없는 한 :

- (a) 모든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에게는 의견교환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의견교환에 관한 사전고지가 각 법원의 절차규정에 따라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행해져야만 한다.
- (b) 법원간의 의견교환은 반드시 녹음되어야만 하며, 녹취서로 작성될 수 있다. 녹취서는 의견교환에 대한 녹음에 기초하여 작성될 수 있으며, 두 법원 모두의 승인하에 의견교환의 공식적인 녹취서로 취급되어야만 한다.
- (c) 쌍방 법원 중 적어도 한 법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의견교환의 녹음 사본과 의견교환의 녹취서 사본, 녹음에 기초하여 작성된 공식 녹취서 사본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재판절차에 관한 기록의 일부분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사본들은 쌍방 법원의 모든 당사자를 위한 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는 비밀보장에 관한 법원의 적절한 명령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d) 법원간 의견교환의 시간과 장소는 쌍방 법원 모두가 만족하는 시간과 장소이어야만 한다. 쌍방 법원 중 적어도 어느 한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명령이 없는 한, 각 법원의 법관 이외의 직원들은, 당사자를 위한 대리인을 참여시키지 않고서도, 법원간의 의견교환을 위한 적절한 준비를 위하여 서로 충분히 의견교환을 행할 수 있다.

## 지침 제8조

지침 3과 5에 따라 전화, 화상회의,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법원과 외국 법원의 권한 있는 대표자 사이, 또는 법원과 외국 도산관재인 사이에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법원으로부터 다른 지시가 없는 한 :

- (a) 모든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에게는 의견교환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의견교환에 관한 사전고지가 각 법원의 절차규정에 따라 모든 당사자에게 행해져야만 한다.
- (b) 의견교환은 반드시 녹음되어야만 하며, 녹취서로 작성될 수 있다. 녹취서는 의견교환에 대한 녹음에 기초하여 작성될 수 있으며, 법원의 승인하에 의견교환의 공식적인 녹취서로 취급될 수 있다.
- (c) 법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의견교환의 녹음 사본과 의견교환의 녹취서 사본, 녹음에 기초하여 작성된 공식 녹취서 사본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재판절차에 관한 기록의 일부분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사본들은 쌍방 법원의 모든 당사자를 위한 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는 비밀보장에 관한 법원의 적절한 명령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d) 의견교환의 시간과 장소는 법원이 만족하는 시간과 장소이어야만 한다.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명령이 없는 한, 법원의 법관 이외의 직원들은, 당사자를 위한 대리인을 참여시키지 않고서도, 의견교환을 위한 적절한 준비를 위하여, 외국법원의 권한 있는 대표자 또는 외국 도산관재인과 사이에 서로 충분히 의견교환을 행할 수 있다.

## 지침 제9조

법원은 다른 법원과 함께 공동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심리에 관하여는, 다른 명령이 있거나 그러한 공동심리에 적용되는 사전승인된 의정서가 있지 않는 한, 다음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a) 각 법원은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는 심리절차를 동시에 들을 수 있어야 한다.
- (b) 일방의 법원에 제출되거나 제출될 증거 또는 서면자료는, 그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심리 이전에 다른 법원에 전달되거나, 일반적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자료의 다른 법원에 대한 전달 또는 전자적 시스템에 의하여 일반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일방의 법원에 위 자료를 제출한 당사자로 하여금 다른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게 하지는 않는다.
- (c) 어느 당사자를 위한 대표자에 의한 제출 또는 신청은, 그 대표자가 다른 법원으로부터 제출권을 특별히 허가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대표자가 출석하고 있는 법원에 대하여만 행해져야 한다.
- (d) 지침 제7조 (b)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질서있게 진술하게 하고 법원들의 질서있는 결정을 위한 지침을 설정하며 공동심리에 관한 절차적·관리적 문제 또는 예비적 문제에 관하여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심리 실시 이전에, 대리인의 출석 또는 불출석하에, 다른 법원과 서로 의견교환을 행할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

(e) 지침 제7조 (b)항의 경우에 있어서, 쌍방의 법원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공동심리에 관련된 어떠한 절차적 또는 비실체적 문제에 관하여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은 공동심리를 실시한 이후에, 대리인의 출석 또는 불출석하에, 다른 법원과 서로 의견교환을 행할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

## 지침 제10조

법원은, 타당한 근거에 기초한 정당한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재판권지역의 절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명령, 규칙의 조항을, 추가 증거 또는 인증등본 없이도, 진정한 것으로 승인하고 인정하여야만 한다.

## 지침 제11조

법원은, 타당한 근거에 기초한 정당한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재판권지역에서 진행된 절차에서 내려진 명령은 그 개별적인 일자에 정당하고 적절하게 내려진 것으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위 명령의 인정은 추가 증거 또는 인증등본을 요하지 않고 행한다. 다만, 법원은, 위 명령에 대하여 실제로 계속 중인 불복 또는 재심사 절차에 관하여, 적절하고 정당한 모든 의견유보를 할 수 있다.

## 지침 제12조

법원은, 다른 재판권지역에 속하는 법원에서 진행중인 절차에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는 당사자("비거주 당사자")를 포함하는 송달목록을 작성함으로써, 그 법원에서 진행중인 절차와 다른 재판권지역에서 진행중인 절차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법원은, 법원에서의 절차를 위하여 송달되는 모든 통지, 신청서, 기타 자료들을,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 또는 팩스전송, 인증 또는 등기우편, 또는 사자에 의한 전달, 기타 법원이 명하는 다른 방법(다만, 그 법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절차에 부합하는 방법이어야 한다)에 의하여, 비거주 당사자에게 제공하거나 송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지침 제13조

법원은 외국 도산관재인, 또는 다른 재판권지역의 절차에서의 채권자 대표, 또는 다른 재판권지역 법원의 권한 있는 대표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허가하는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출석하여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 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지침 제14조

법원은, 그 법원의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절차의 정지가 그 당사자가 다른 법원에 제출한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할 수 있다(이에 관하여 법원은 추가적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또는 조건하에서, 위 당사자가 다른 법원에 위와 같은 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지침 제6조와 제7조에 의한 법원간의 의견교환은, 법원에 제출된 신청이 다른 재판관할권에 있는 법원에서의 쟁점이나 절차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다.

## 지침 제15조

법원은, 쟁점 및(또는) 당사자에 관하여 공통점이 있는 때에는 언제라도, 쌍방 법원에 계속 중인 절차의 형태에 불구하고, 절차의 조정과 조화를 위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방법으로, 다른 재판권지역 법원과 사이에, 또는 위 법원의 권한 있는 대표자와 사이에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정의에 부합하는 이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반하는 강제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다른 재판권지역의 법원과 위와 같은 의견교환을 행하여야만 한다.

## 지침 제16조

이 지침하에서 법원이 내린 지시는, 앞서 기재한 목적들을 위하여 또는 국내절차와

외국절차 진행 중 수시로 발생하는 변화·진행단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개정, 수정, 연장될 수 있다. 어떠한 지시사항도 수시로 보충, 수정, 변경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개정, 변경은 쌍방의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일방의 법원이 이 지침에 의하여 내려진 지시사항을, 쌍방 법원의 공동 승인 없이, 보충, 개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원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다른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지침 제17조

이 지침하에서 체결된 협약은, 어떠한 권한, 책임 또는 권위를 가지는 법원의 양보 또는 권한의 포기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위 협약은 당해 법원 또는 다른 법원에 계속된 분쟁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 및 청구의 포기 또는 당해 법원이나 다른 법원이 내린 명령의 효력 감소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Guidelines**  
**Applicable to Court-to-Court Communications**  
**in Cross-Border Cases**

***Introduction:***

One of the most essential elements of cooperation in cross-border cases is communication among the administering authorities of the countries involved.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the courts in insolvency and reorganization proceedings, it is even more essential that the supervising courts be able to coordinate their activities to assure the maximum available benefit for the stakeholders of financially troubled enterprises.

These Guidelines are intended to enhance coordination and harmonization of insolvency proceedings that involve more than one country through communications among the jurisdictions involved. Communications by judges directly with judges or administrators in a foreign country, however, raise issues of credibility and proper procedures. The context alone is likely to create concern in litigants unless the process is transparent and clearly fair. Thus, communication among courts in cross-border cases is both more important and more sensitive than in domestic cases. These Guidelines encourage such communications while channeling them through transparent procedures. The Guidelines are meant to permit rapid cooperation in a developing insolvency case while ensuring due process to all concerned.

A Court intending to employ the Guidelines — in whole or part, with or without modifications — should adopt them formally before applying them. A Court may wish to make its adoption of the Guidelines contingent upon, or temporary until, their adoption by other courts concerned in the matter. The adopting Court may want to make adoption or continuance conditional upon adoption of the Guidelines by the other Court in a substantially similar form, to ensure that judges, counsel, and parties are not subject to different standards of conduct.

The Guidelines should be adopted following such notice to the parties and counsel as would be given under local procedures with regard to any important procedural decision under similar circumstances. If communication with other courts is urgently needed, the local procedures, including notice requirements, that are used in urgent or emergency situations should be employed, including, if appropriate, an initial period of effectiveness, followed by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Guidelines at a later time. Questions about the parties entitled to such notice (for example, all parties or representative parties or representative counsel) and the nature of the court's consideration of any objections (for example, with or without a hearing) are governed by the Rules of Procedure in each jurisdiction and are not addressed in the Guidelines.

The Guidelines are not meant to be static, but are meant to be adapted and modified to fit the circumstances of individual cases and to change and evolve as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community gains experience from working with them. They are to apply only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local procedures and local ethical requirements. They do not address the details of notice and procedure that depend upon the law and practice in each jurisdiction. However, the Guidelines represent approaches that are likely to be highly useful in achieving efficient and just resolutions of cross-border insolvency issues. Their use, with such modifications and under such circumstances as may be appropriate in a particular case, is therefore recommended.

### **Guideline 1**

Except in circumstances of urgency, prior to a communication with another Court, the Court should be satisfied that such a communication is consistent with all applicable Rules of Procedure in its country. Where a Court intends to apply these Guidelines (in whole or in part and with or without modifications), the Guidelines to be employed should, wherever possible, be formally adopted before they are applied. Coordination of Guidelines between courts is desirable and officials of both courts may communicate in accordance with Guideline 8(d)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 **Guideline 2**

A Court may communicate with another Court in connection with matters relating to proceedings before it for the purposes of coordinating and harmonizing proceedings before it with those in the other jurisdiction.

### **Guideline 3**

A Court may communicate with an Insolvency Administrator in another jurisdiction or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Court in that jurisdiction in connection with the coordination and harmonization of the proceedings before it with the proceedings in the other jurisdiction.

#### **Guideline 4**

A Court may permit a duly authorized Insolvency Administrator to communicate with a foreign Court directly,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foreign Court, or through an Insolvency Administrator in the other jurisdiction or through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oreign Court on such terms as the Court considers appropriate.

#### **Guideline 5**

A Court may receive communications from a foreign Court or from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oreign Court or from a foreign Insolvency Administrator and should respond directly if the communication is from a foreign Court (subject to Guideline 7 in the case of two-way communications) and may respond directly or through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Court or through a duly authorized Insolvency Administrator if the communication is from a foreign Insolvency Administrator, subject to local rules concerning ex parte communications.

#### **Guideline 6**

Communications from a Court to another Court may take place by or through the Court:

- (a) Sending or transmitting copies of formal orders, judgments, opinions, reasons for decision, endorsements, transcripts of proceedings, or other documents directly to the other Court and providing advance notice to counsel for affected parties in such manner as the Court considers appropriate;
- (b) Directing counsel or a foreign or domestic Insolvency Administrator to transmit or deliver copies of documents, pleadings, affidavits, factums, briefs, or other documents that are filed or to be filed with the Court to the other Court in such fashion as may be appropriate and providing advance notice to counsel for affected parties in such manner as the Court considers appropriate;
- (c) Participating in two-way communications with the other Court by telephone or video conference call or other electronic means, in which case Guideline 7 should apply.

### **Guideline 7**

In the event of communications between the Courts in accordance with Guidelines 2 and 5 by means of telephone or video conference call or other electronic means, unless otherwise directed by either of the two Courts:

- (a) Counsel for all affected parties should be entitled to participate in person during the communication and advance notice of the communication should be given to all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applicable in each Court;
- (b)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Courts should be recorded and may be transcribed. A written transcript may be prepared from a recording of the communication which, with the approval of both Courts, should be treated as an official transcript of the communication;
- (c) Copies of any recording of the communication, of any transcript of the communication prepared pursuant to any Direction of either Court, and of any official transcript prepared from a recording should be filed as part of the record in the proceedings and made available to counsel for all parties in both Courts subject to such Directions as to confidentiality as the Courts may consider appropriate; and
- (d) The time and place for communications between the Courts should be to the satisfaction of both Courts. Personnel other than Judges in each Court may communicate fully with each other to establish appropriate arrangements for the communication without the necessity for participation by counsel unless otherwise ordered by either of the Courts.

### **Guideline 8**

In the event of communications between the Court and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oreign Court or a foreign Insolvency Administrator in accordance with Guidelines 3 and 5 by means of telephone or video conference call or other electronic means, unless otherwise directed by the Court:

- (a) Counsel for all affected parties should be entitled to participate in person during the communication and advance notice of the



communication should be given to all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applicable in each Court;

- (b) The communication should be recorded and may be transcribed. A written transcript may be prepared from a recording of the communication which, with the approval of the Court, can be treated as an official transcript of the communication;
- (c) Copies of any recording of the communication, of any transcript of the communication prepared pursuant to any Direction of the Court, and of any official transcript prepared from a recording should be filed as part of the record in the proceedings and made available to the other Court and to counsel for all parties in both Courts subject to such Directions as to confidentiality as the Court may consider appropriate; and
- (d) The time and place for the communication should be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urt. Personnel of the Court other than Judges may communicate fully with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oreign Court or the foreign Insolvency Administrator to establish appropriate arrangements for the communication without the necessity for participation by counsel unless otherwise ordered by the Court.

#### **Guideline 9**

A Court may conduct a joint hearing with another Court. In connection with any such joint hearing, the following should apply, unless otherwise ordered or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any previously approved Protocol applicable to such joint hearing:

- (a) Each Court should be able to simultaneously hear the proceedings in the other Court.
- (b) Evidentiary or written materials filed or to be filed in one Court should,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s of that Court, be transmitted to the other Court or made available electronically in a publicly accessible system in advance of the hearing. Transmittal of such material to the other Court or its public availability in an electronic system should not subject the party filing the material in one Court to the jurisdiction of the other Court.

- (c) Submissions or applications by the representative of any party should be made only to the Court in which the representative making the submissions is appearing unless the representative is specifically given permission by the other Court to make submissions to it.
- (d) Subject to Guideline 7(b), the Court should be entitled to communicate with the other Court in advance of a joint hearing, with or without counsel being present, to establish Guidelines for the orderly making of submissions and rendering of decisions by the Courts, and to coordinate and resolve any procedural, administrative, or preliminary matters relating to the joint hearing.
- (e) Subject to Guideline 7(b), the Court, subsequent to the joint hearing, should be entitled to communicate with the other Court, with or without counsel present,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coordinated orders could be made by both Courts and to coordinate and resolve any procedural or nonsubstantive matters relating to the joint hearing.

#### **Guideline 10**

The Court should, except upon proper objection on valid grounds and then only to the extent of such objection, recognize and accept as authentic the provisions of statutes, statutory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rules of court of general application applicable to the proceedings in the other jurisdiction without the need for further proof or exemplification thereof.

#### **Guideline 11**

The Court should, except upon proper objection on valid grounds and then only to the extent of such objection, accept that Orders made in the proceedings in the other jurisdiction were duly and properly made or entered on or about their respective dates and accept that such Orders require no further proof or exemplification for purposes of the proceedings before it, subject to all such proper reservations as in the opinion of the Court are appropriate regarding proceedings by way of appeal or review that are actually pending in respect of any such Orders.

### **Guideline 12**

The Court may coordinate proceedings before it with proceedings in another jurisdiction by establishing a Service List that may include parties that are entitled to receive notice of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in the other jurisdiction ("Non-Resident Parties"). All notices, applications, motions, and other materials served for purposes of the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may be ordered to also be provided to or served on the Non-Resident Parties by making such materials available electronically in a publicly accessible system or by facsimile transmission, certified or registered mail or delivery by courier, or in such other manner as may be directed by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pplicable in the Court.

### **Guideline 13**

The Court may issue an Order or issue Directions permitting the foreign Insolvency Administrator or a representative of creditors in the proceedings in the other jurisdiction or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Court in the other jurisdiction to appear and be heard by the Court without thereby becoming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 **Guideline 14**

The Court may direct that any stay of proceedings affecting the parties before it shall, subject to further order of the Court, not apply to applications or motions brought by such parties before the other Court or that relief be granted to permit such parties to bring such applications or motions before the other Court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it considers appropriate. Court-to-Court communications in accordance with Guidelines 6 and 7 hereof may take place if an application or motion brought before the Court affects or might affect issues or proceedings in the Court in the other jurisdiction.

### **Guideline 15**

A Court may communicate with a Court in another jurisdiction or with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such Court in the manner prescribed by these Guidelines for purposes of coordinating and harmonizing proceedings before it with proceedings in the other jurisdiction regardless of the form of the proceedings before it or before the other Court wherever there is commonality among the issues and/or the parties in the proceedings. The Court should, absent

compelling reasons to the contrary, so communicate with the Court in the other jurisdiction where the interests of justice so require.

#### **Guideline 16**

Directions issued by the Court under these Guidelines are subject to such amendments, modifications, and extensions as may be considered appropriate by the Court for the purposes described above and to reflect the changes and developments from time to time in the proceedings before it and before the other Court. Any Directions may be supplemented, modified, and restated from time to time and such modifications, amendments, and restatements should become effective upon being accepted by both Courts. If either Court intends to supplement, change, or abrogate Directions issued under these Guidelines in the absence of joint approval by both Courts, the Court should give the other Courts involved reasonable notice of its intention to do so.

#### **Guideline 17**

Arrangements contemplated under these Guidelines do not constitute a compromise or waiver by the Court of any powers, responsibilities, or authority and do not constitute a substantive determination of any matter in controversy before the Court or before the other Court nor a waiver by any of the parties of any of their substantive rights and claims or a diminution of the effect of any of the Orders made by the Court or the other Court.